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925

발의연월일: 2022. 3. 23.

발 의 자:백혜련·김상희·김영호

박영순 · 송재호 · 오영환

윤건영 • 이상민 • 이형석

최종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시·도지사가 시장지역, 공장·창고,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소방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3년간, 한익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, 군포 물류창고 화재 사고,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이 대규모 물류단지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음. 이러한 화재는 그 경제적·인적 피해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 삶 전반에 큰 피해를 주므로 물류단지의 밀집지역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당연 지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대상에 물류단지의 밀집지역을 포함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1항제9호 신설). 법률 제 호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8523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0호(종전의 제9호) 중 "제8호"를 "제9호"로 한 다.

9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가 밀집한 지역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8523호 화재의 예방 및	법률 제18523호 화재의 예방 및
안전관리에 관한 법률	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제18조(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	제18조(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
등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	등) ①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	
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	
하여 관리할 수 있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9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
	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
	따른 물류단지가 밀집한 지역
<u>9.</u> 그 밖에 제1호부터 <u>제8호</u> 까	<u>10.</u> <u>শী9ই</u>
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	
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	
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	
인정하는 지역	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